

우송교양교육연구소 운영규정

제 정 2020. 11.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 연구소는 우송대학교 부설 「우송교양교육연구소(이하 '본 연구소'라 한다)」라 칭한다.

제2조 (소재) 본 연구소는 우송대학교(이하 '본교'라 한다)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 연구소는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연구 및 특별활동을 통해 우송교양대학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나아가 본교 전체의 교육을 선진화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4조 (사업)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한다.

1. 본교 교양교육 전반에 대한 자체 진단 및 개선책 모색
2. 필요한 교과목의 신규 개발
3. 교양교육의 교수-학습 방법 개선안 제공
4.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에 관련되는 사업

제2장 조 직

제5조 (부서) 본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각 부서를 둘 수 있다.

제6조 (임원) 본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연구소장 1명
2. 부서별 연구원
3. 객원 연구원
4. 연구조원

제7조 (임원의 임명) ①연구소장은 본교의 교원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로 보하며, 우송교양대학장(이하 '교양대학장'이라 한다)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
②그 밖의 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교양대학장이 임명한다.

제8조 (임무) ①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.

②부서별 연구원은 교양대학장 및 연구소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.

③객원 연구원은 교양대학장 및 연구소장의 위촉에 따라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.

④연구조원은 해당 연구원의 연구활동을 돕는다.

제3장 운 영

제9조 (운영위원회) ①본 연구소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운영위원은 우송교양대학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교무처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한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 (운영경비) 본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학술용역사업 수익금
2. 정부재정지원금
3. 기타 보조금
4. 본교 예산 지원금

제11조 (회계) ①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②본 연구소의 예산, 결산,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.

③본 연구소의 일반 운영경비는 자체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연구기반조성을 위하여 본교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이에 따른 효과를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따로 명시한다.

제12조 (연구비 관리)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모든 학술용역사업은 연구비중앙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